

제6장 소득산정 및 재직·사업영위 확인

1 소득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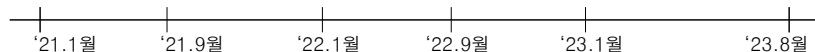
- 1) ‘증빙소득’은 소득금액이 객관적인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 2)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
- 3) 증빙소득의 입증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본 장 5. 인정소득에 따른 연소득 산정 및 입증방법에 따라 연소득 산정 허용

2 증빙소득의 연소득 산정방법

- 1) 채무자 및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의 최근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하여 연소득 산정
 - (1) 채무자의 증빙소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증빙소득과 합산 가능
 - (2) 우대금리 적용 등 부부 합산 연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
 - (3) 2개 이상의 소득원을 유지중인 경우 각 소득별 최근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
- 2) 연소득은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1년간 연소득’으로 산정
 - 1년 미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에 한해 일할*하여 연환산
 - * 연간일수는 365일로 하되 윤년의 경우 366일로 적용하며, 초일산입 및 소수점 이하 절사
- 3) 2개년 증빙소득의 차이*를 계산하여 20% 초과 여부에 따라 연소득 산정
 - * 산식 : $|(\text{최근년도 소득} - \text{최근년도의 전년도 소득}) / \text{최근년도 소득}| \times 100\% > 20\%$
 - (1) 20% 이하 : 최근년도 소득
 - (2) 20% 초과 : 2개년 평균소득
 - (3) 위 (2)에도 불구하고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이하 ‘상시소득’)인 경우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 4)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 2개년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우의 연소득 산정방법 예시

□ 채무자가 입증한 서류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



- ① (소득산정) '22년 과세전 연소득 + (확인) '21년도 과세전 연소득 :
'22.1월~'22.12월(12개월) 소득 + '21.1월~'21.12월(12개월) 소득
- ② (소득산정) 최근 1년간 연소득 + (확인) 최근 1개년 소득의 전년도 1개년 연소득 :
'22.9월~'23.8월(12개월) 소득 + '21.9월~'22.8월(12개월) 소득
- ③ (소득산정) '23년 과세전 연소득 + (확인) '22년 과세전 연소득 :
'23.1월~'23.8월(8개월) 소득 연환산(사업소득은 선택) + '22.1월~'22.12월(12개월) 소득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1.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2.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3.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 상시소득 입증 예시

1. 근로소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2. 사업소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자가건물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3. 연금소득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속적인 연금지급 입증 서류
4. 기타소득 : 고용계약서 등 (원칙적으로는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

- 5) 소득발생기간이 1년 이하로 2개년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 동 1년 이하의 소득을 연환산 후 10% 차감하여 소득 산정(이하 ‘10% 차감소득’)
- 상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차감 미적용
- 6) 제5장 1.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정하는 ‘실수요자’ 소득요건 판단 시, ‘2개년 평균소득’ 또는 ‘10% 차감소득’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적용한 소득으로 판단
- 7) 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연환산
 - (1) 사업소득은 계절효과로 인해 연환산이 도리어 소득액을 왜곡할 수 있어 연환산 여부를 선택 가능
 - (2) 연환산 시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소득입증서류상의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 ~ 1년 미만임을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로도 연환산 가능
 - (3) 소득발생기간(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이나 입증서류상의 수령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연환산 가능
 - (4) 채무자가 2개 이상의 소득원을 유지중인 경우 각 소득별로 연환산하여 합산
 - (5)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서류로 근로기간이 입증되는 경우 연환산 가능

(6) 연금소득은 수령증서 상의 연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평균 실수령액을 연 환산한 금액

① 연금소득 산정 시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등 공적기금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상병급여·연장급여·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제외

※ 소득원별 연간소득 산정방법 예시

소득원	서류명칭	연소득 산정방식
근로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ISA용)	1년 소득확인 시 : 증명원상 수입금액 또는 지급받은 총액 1년 소득확인 불가 시 : 소득합계 ÷ 해당 근무일수 × 연간일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소득확인 시 : 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1년 소득확인 불가 시 : 소득합계 ÷ 해당 근무일수 × 연간일수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1년 소득확인 시 : 12개월 합계금액 1년 소득확인 불가 시 : 월별합계금액 ÷ 해당근무일수 × 연간일수
사업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증명원상 소득금액(연환산 선택)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영수증상 소득금액(연환산 선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영수증상 지급총액 × 60%(연환산 선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계산서상 종합소득금액(연환산 선택)
연금 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1년 소득 확인 시 : 1년간 수령액 합계 1년 소득 확인 불가 시 : 수령액 합계 ÷ 수령기간일수 × 연간일수
기타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증명원상 소득금액 또는 지급받은 총액

3 휴직 등 예외적인 경우의 증빙소득 산정방법

1) 신청일 기준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내*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예시) 2023년 2월 신청한 경우 2020년 2월~2023년 1월

2) 본 절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장 2. 증빙소득의 연소득 산정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신청일 기준 복직자는 복직 이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복직 이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자로 간주할 수 있음

4) 신청일 기준 퇴직(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

6)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입증이 없는 한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

7) 해외소득의 산정은 소득 관련 서류에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외국 세무서 등)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간주

* 협약가입국 사이에서 영사확인 등의 공문서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동 문서를 인증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독일 등 92개국이 가입

○ 해외소득의 원화환산 등은 개별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

4 증빙소득의 입증방법

1) 근로·사업(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연금·기타소득 등의 모든 종합소득 합산

○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액과 다른 입증방법에 의한 소득액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 징구하여 소득 종류(근로, 사업소득)를 확인 하되, 신청인이 소득 및 재직(또는 사업영위)서류를 별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심사

- 3)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도 연소득 산정 가능
 - 위 3)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 사용 불가
- 4)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종 및 업태는 동일하고 상호만 변경된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을 인정하며,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인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인정
- 5) 소득발생기간 충족 여부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소득종류에 따른 입증서류〉

소득종류	입증서류
근로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ISA :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그 실질이 원천징수를 증명하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 제외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사업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ISA)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적용소득률이 고려된 사업소득금액을 그대로 적용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적용소득률 60%를 적용한 환산소득액을 연소득으로 간주. 즉, 환산소득액 = 지급총액 × 60%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연금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연금수령통장 사본 추가 -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연금도 인정 가능 - 통장 분실 등으로 입금 통장 사본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로 확인
기타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인정소득에 따른 연소득 산정 및 입증방법

- 1)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소득 추정 가능
- 2)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
 - (1) 국세청 홈택스의 “사실증명원” (www.hometax.go.kr→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신고사실없음)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 (2)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3)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4) 부부 합산 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인 경우
- 3)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시 아래 항목에 따라 소득 추정

(1) 입증서류

납부내역	입증서류
국민연금	■ 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 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단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세대주인 경우만 인정

(2) 입증서류에 의해 소득 추정하는 경우

납부내역	소득 추정 방법
국민연금	■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 연금보험료율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에 따름
건강보험료	■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를 말하며, 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가 다른 건강보험간 혼용불가 **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에 1/2을 곱한 요율로 함

(3) 입증서류 없이* 소득 추정하는 경우

* 고객 동의하에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

납부내역	소득 추정 방법
국민연금	■ 연소득 = 기준 소득월액 최근 3개월 평균 × 12월 × 95%
건강보험료	■ 연소득 = 평균 보수월액 최근 3개월 평균 × 12월 × 95%

- 4) 신청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 추정 불가하나 승인일 기준 미납이 정리된 경우 소득 추정 가능
- 5)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시에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함
 - 실수요자, 우대금리 적용대상 등 우대요건 확인 시 5천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위 3)에 따라 95%를 적용한 소득 추정 금액으로 우대요건 충족 여부 판단
- 6)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 불가

6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 1) 중병소득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인 경우 재직 또는 사업영위 사실을 확인
- 2) 재직 사실 확인 방법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 (2) 건강보험 적용대상 제외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판단에 따라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
- 3) 사업영위 사실 확인 방법
 -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영위 사실 확인
- 4) 위 2)와 3)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갈음
- 5) 기타
 - (1) 일용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 생략 가능
 - (2) 위 (1)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을 연환산하거나 신청인이 상시소득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지급명세서 등으로 소득 발생기간 및 현재 유지 여부 확인
 - (3)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생략 가능